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보도참고자료

보도 시점 2025. 8. 1.(금) 12:00 배포 2025. 8. 1.(금) 10:00

12월 결산법인은 9.1.(월)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

- 폭우 피해 기업 등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 -
- **공시대상기업**은 반드시 **가결산 방식**으로 계산해야 -

□ **(신고개요)** 12월 결산법인은 **9월 1일**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**중간예납세액**을 **신고·납부**해야 합니다. **참고 1**

○ **(제도변경)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** 2,600여 **법인**은 **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**을 **기준(가결산 방식)**으로 **세액**을 **계산**해야 합니다. 그러나,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**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**됩니다.

○ **그 외 법인**은 ❶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%**를 납부하거나 ❷**상반기 사업실적**을 **가결산**하여 중간예납세액을 **납부**할 수 있습니다.

○ 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**으로 계산한 금액이 **50만원 미만**인 **중소기업**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**제외**됩니다.

○ 이번에 신고·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**52만 8천 개 법인**으로 지난해 51만 7천 개 보다 **1만 1천여 개 증가**하였습니다.

<최근 5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>

□ **(신고편의)** 8월 1일부터 **홈택스**(손택스)로 편리하게 **신고**할 수 있습니다.

○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**「미리채움 서비스」**를 이용하여 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**으로 **간편**하게 **신고**할 수 있고

○ **「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」**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**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**를 **바로 확인**할 수 있습니다. **참고 2**

□ (분할납부) 납부할 세액이 **1천만 원**을 **초과**하는 경우 **분할납부제도를 이용**하면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.

분할납부 금 액	‣ 납부할 세액이 **2천만원 이하**인 경우 ➡ **1천만원 초과 금액** ‣ 납부할 세액이 **2천만원 초과**인 경우 ➡ **납부할 세액의 50% 이하 금액**
분할납부 기 한	‣ **중소기업** :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**2개월 이내**(올해는 11.3.까지) ‣ **일반기업** :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**1개월 이내**(올해는 10.1.까지)

* (예) 납부할 세액이 1,700만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: 9.1.까지 1,000만원 납부, 11.3.까지 700만원 납부
납부할 세액이 5,000만원인 일반기업의 경우 : 9.1.까지 2,500만원 납부, 10.1.까지 2,500만원 납부

□ (세정지원) **자연재해**, **관세피해**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38,800여 납세자**의 신속한 **피해복구**를 지원하고 **자금 부담**을 **덜어주기** 위해 **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**을 **2개월 직권 연장**합니다. **참고 3·4**

○ **폭우**, **대형산불**, **항공기 사고**로 인해 **특별재난지역**으로 선포된 지역의 **9,600여 중소기업**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**석유화학·철강·건설 중소기업 24,900여 곳**, **관세피해 수출기업**이 그 대상이며,

○ **수출 기업**의 경우 4,055개 **중소기업**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 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**중견기업**을 **지원대상**에 **추가**하였습니다.

○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**납부서 출력시 연장된 납부기한(11월 3일)으로 출력**되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

○ 그 밖에도 **사업**에 **현저한 손실**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**신청**하면 **적극적**으로 **검토**하여 **최대한 수용**할 계획입니다.

*** 홈택스 경로** ➡ 증명·등록 신청→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→신고·납부 기한연장 신청/내역조회

담당 부서 <총괄>	법인납세국 법인세과	책임자	과 장	황동수 (044-204-3301)
		담당자	서기관	이희범 (044-204-331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상원 (044-204-2551)
		담당자	사무관	임동욱 (044-204-255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·납부 개요

□ **(신고대상)** 영리내국법인,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,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**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**하는 법인

○ 다만, **중소기업**으로서 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**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**50만 원 미만**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·납부의무 면제

중간예납 신고 · 납부의무 면제 대상

-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
-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)
-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,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,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
-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
-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 제3호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

□ **(중간예납 방식)** ❶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**을 기준으로 **납부**하는 방식과 ❷**상반기**('25년 1월 ~ 6월) **실적**을 **가결산**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**선택**

*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❷가결산 방식으로 신고

중간예납 방식(❶ · ❷ 중 선택)

❶ 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** :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/2을 납부

중간예납세액	=	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(공제·감면세액 등 차감)	×	50%

❷ **가결산 방식** : 상반기('25.1. ~ '25.6.)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

중간예납세액	=	상반기 과세표준 × 2 [각사업연도소득금액(익금⊖손금) - 이월결손금 –비과세소득 – 소득공제]	×	세율	×	$\frac{6}{12}$	-	상반기 ·공제·감면세액 ·원천징수세액 ·수시부과세액

□ **(납부)**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, 은행 등 방문 없이 **홈택스***를 통해 **신용카드 · 간편결제** 등으로 **납부** 가능

* 신고 직후 : 팝업창 ≫ '납부하기' 선택
* 일반 경로 : 홈택스 ≫ 납부·고지·환급 ≫ 납부 ≫ 납부할 세액 조회/납부

참고 2 홈택스 미리채움·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개요

□ 미리채움(Pre-filled) 서비스

○ 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**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**분납세액**만 **입력**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「**미리채움 서비스**」를 이용할 수 있음

*** 홈택스 경로** ➡ (원스톱) 접속 후 알림창 →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

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

'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(자기계산기준)'으로 신고할 경우 파일변환신고 또는 세무서 제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(단위:원)

직전 사업연도 법인세			납부세액계산		
101	산출세액	134,260,000	108	중간예납세액 (107×6/직전사업연도월수)	67,130,000
102	공제감면세액		109	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세액공제신청서 작성	
103	가산세액		110	차감중간예납세액(108-109)	67,130,000
104	확정세액(101-102+103)	134,260,000	111	(미납세액,미납일수,세율)	(, , 2.2/10,000
105	수시부과세액			가산세액	
106	원천납부세액		112	납부할세액계(110+111)	67,130,000
107	차감세액(104-105-106)	134,260,000	113	분납세액	33,565,000
			114	납부세액(112-113)	33,565,000

□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

○ 홈택스의 「**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**」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**예상 중간예납세액**과 중간예납 **면제* 여부**를 확인할 수 있음

*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

*** 홈택스 경로** ➡ (원스톱) 접속 후 알림창 →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

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세부내역

사업연도 월수			12
산출세액	120,927,032	공제감면세액	0
가산세액	0	확정세액	120,927,032
수시부과세액	0	원천납부세액	1,798,720
차감세액	119,128,312	중간예납세액	59,564,156

참고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

□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

❶ (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) **폭우·산불** 등 **피해 지역**에 소재한 **중소기업**

❷ (수출 중소·중견기업) **수출 비중, 매출 감소**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

❸ (석유화학·철강·건설 중소기업) 주업종, **매출 감소**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

▌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▐

구 분	선정기준	법인수
❶ 특별재난지역	‣ **집중호우 피해 지역***에 소재한 중소기업 * 경기 가평, 충남 서산·예산, 전남 담양, 경남 산청·합천	4,135
	‣ **대형산불 피해 지역***에 소재한 중소기업 * 경남 산청·하동, 울산 울주, 경북 의성·안동·청송·영양·영덕	4,593
	‣ **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** 및 **특별재난지역**(전남 무안)에 소재한 중소기업	945
❷ 수출 중소·중견기업	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수출 중소·중견기업**으로서 '23년 대비 '24년 **매출이 감소**할 것 ① '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③ 무역협회 선정 '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'·'수출의탑 수상기업'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	4,242
❸ 석유화학·철강·건설	‣ **석유화학·철강·건설업**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**중소기업**으로서 '23년 대비 '24년 **매출이 감소**한 법인	24,968

□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

○ (연장 절차) **일반적**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**연장 신청이 필요**하나, 직권 연장 대상자는 **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**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

○ (연장 기간)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**9월 1일까지 신고**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1일에서 11월 3일로 **2개월 직권 연장***

*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(11월 3일)으로 출력

- 아울러, **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**의 납부할 세액이 **1천만 원을 초과**하는 경우에는 **분할납부 금액**의 납부기한도 **2개월 직권 연장**됨

▌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▐

구 분	일반기업	중소기업
분할납부 시기	'25년 10월 1일 → '25년 12월 1일	'25년 11월 3일 → '26년 1월 5일

참고 4 중간예납 세정지원 현황

□ 중간예납 세정지원 현황

○ 지원대상 법인의 **중간예납 규모**는 **8,084억원**(전년대비 1,840억원↑)이며 **석유화학·철강·건설업 세액**이 4,088억원으로 **50.6% 차지**

지원구분		법인수	'24년 중간예납실적	'25년 예상 중간예납세액*
합 계		38,883개	6,244억원 (100.0%)	8,084억원 (100.0%)
❶특별재난지역	소 계	9,673개	792억원 (12.7%)	1,042억원 (12.9%)
	집중호우	4,135개	333억원 (5.3%)	577억원 (7.1%)
	대형산불	4,593개	413억원 (6.6%)	411억원 (5.12%)
	제주항공	945개	46억원 (0.8%)	54억원 (0.7%)
❷수출 기업	소 계	4,242개	2,499억원 (40.0%)	2,954억원 (36.5%)
	중소기업	4,055개	1,698억원 (27.2%)	1,688억원 (20.9%)
	중견기업	187개	801억원 (12.8%)	1,266억원 (15.7%)
❸석유화학·철강·건설	소 계	24,968개	2,953억원 (47.3%)	4,088억원 (50.6%)
	건설업	21,796개	2,080억원 (33.3%)	3,007억원 (37.2%)
	철강	1,258개	323억원 (5.2%)	372억원 (4.6%)
	석유화학	1,914개	550억원 (8.8%)	709억원 (8.8%)

*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예상세액

□ 특별재난지역별 세정지원 현황

○ **집중호우** 지원기업은 **4,135개**로 재난지역 지원자의 **42.7% 차지**

구 분		합계	집중호우	대형산불	제주항공
합 계		9,673개	4,135개	4,593개	945개
집중호우	소 계	4,031개	4,031개		
	서산시	1,266개	1,266개		
	담양군	862개	862개		
	예산군	788개	788개		
	가평군	705개	705개		
	합천군	410개	410개		
호우+산불	산청군	411개	104개	307개	
대형산불	소 계	4,286개		4,286개	
	울주군	2,106개		2,106개	
	안동시	983개		983개	
	의성군	381개		381개	
	영덕군	279개		279개	
	하동군	251개		251개	
	청송군	165개		165개	
	영양군	121개		121개	
제주항공	무안군	945개			945개